

공사 시방서

< 역사 시설물 개선공사 >

B&G Metro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제1장 총 칙

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가 발주한 “역사 시설물 개선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

1.2 작업일반

- (1)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 (2)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가설재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내판, 위험표지판,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 (3) 모든 자재는 KS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재 반입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시공기간 동안 타공종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5) 철거된 자재를 감독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 (6) 철거재 및 제작 작업시 잔재 운반시 기지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
- (7) 제작 설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 (8) 기타 제작 설치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전, 후)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완료 후 2부 제출. (사진첩 1부, 별도 양식에 의거 사진 1부, 기타 필요에 의해 촬영한 사진은 CD-DISC에 저장 보관하여 1부 제출토록 한다.)

1.3 현장 대리인

- (1) "을"은 공사 착공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으며, 공사 전반적인 사항의 책임자를 "갑"의 확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절대로 재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시 당사 임의대로 공사를 해지할 수 있다.

- (2)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사항 일체에 대하여 "을"의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를 "갑"에게 제출한다.
- (3) 공사수행에 있어서 능력과 성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갑"은 이의 교체를 명하여 "을"은 3일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1.4 "을"의 부담 항목

- (1) 현장설명서,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아도 공사수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사항
- (2) "을"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 (3) "갑"이 지급한 자재의 분실, 오염, 훼손에 대한 관리, "갑"으로부터 각종 자재를 인수한 후에 "을"의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오염, 훼손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이 경우 "을"의 부담으로 변상, 구입, 시공하여야 한다.

1.5 기타

- (1) "갑"은 "갑"의 사정이나 감독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다.
- (2) "을"은 입찰시 "갑"의 요구가 있을시 특정내역의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갑"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 조기작업 및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당초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4)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5) 현장 내 가설숙소는 인정치 않으며, 가설 사무실과 창고는 "갑"이 지정하는 위치에 "을"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정진행상 "갑"의 이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 (6)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해당시)
"을"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을"은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

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갑"을 보호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을"은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갑"이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갑"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제2장 시 공 내 용

2-1 공사장소 및 범위

- (1) 공사장소 : 사상역외 4개역사
- (2) 공사범위
 - 사상역 : PJ창호 설치(FIX창호 PJ 창호로 변경)
 - 쾌법르네시떼역 : 어닝설치, 창호설치, 고무매트 설치
 - 서부산유통지구역 : 어닝설치, 트렌치설치, 고무매트 설치
 - 공항역, 박물관역 : 비둘기 퇴치용 와이어 설치
- (3) 공사물량

역사명	품명	물량 상세	비 고
사상역	페어유리(강화유리) 18mm 복층	900*1000*2ea	재설치 PJ창호틀, 방충망 포함
		1800*500*2ea	
		900*500*2ea	
쾌법르네시떼역	육교 창호 설치	2250*2640	신규설치
		1500*2640	
		7800*2640	
		1025*2640	
		1250*2640	
	어닝설치	4000*2000	용접고정

	고무매트	EV 앞 기계실 전체 1개소	육교하부
서부산유통지구역	어닝설치	4000*2000*2ea	용접고정
	트렌치설치	100*50*4000*2ea	배수관포함
	고무매트	EV 앞 기계실 전체 2개소	육교상부
공항역 박물관역	비둘기 퇴치시설	육교 진출입 철골빔 2개소, 엘리베이터 상부	와이어 설치

(4) 시공관련 참고 현장사진 및 도면

괘법르네시떼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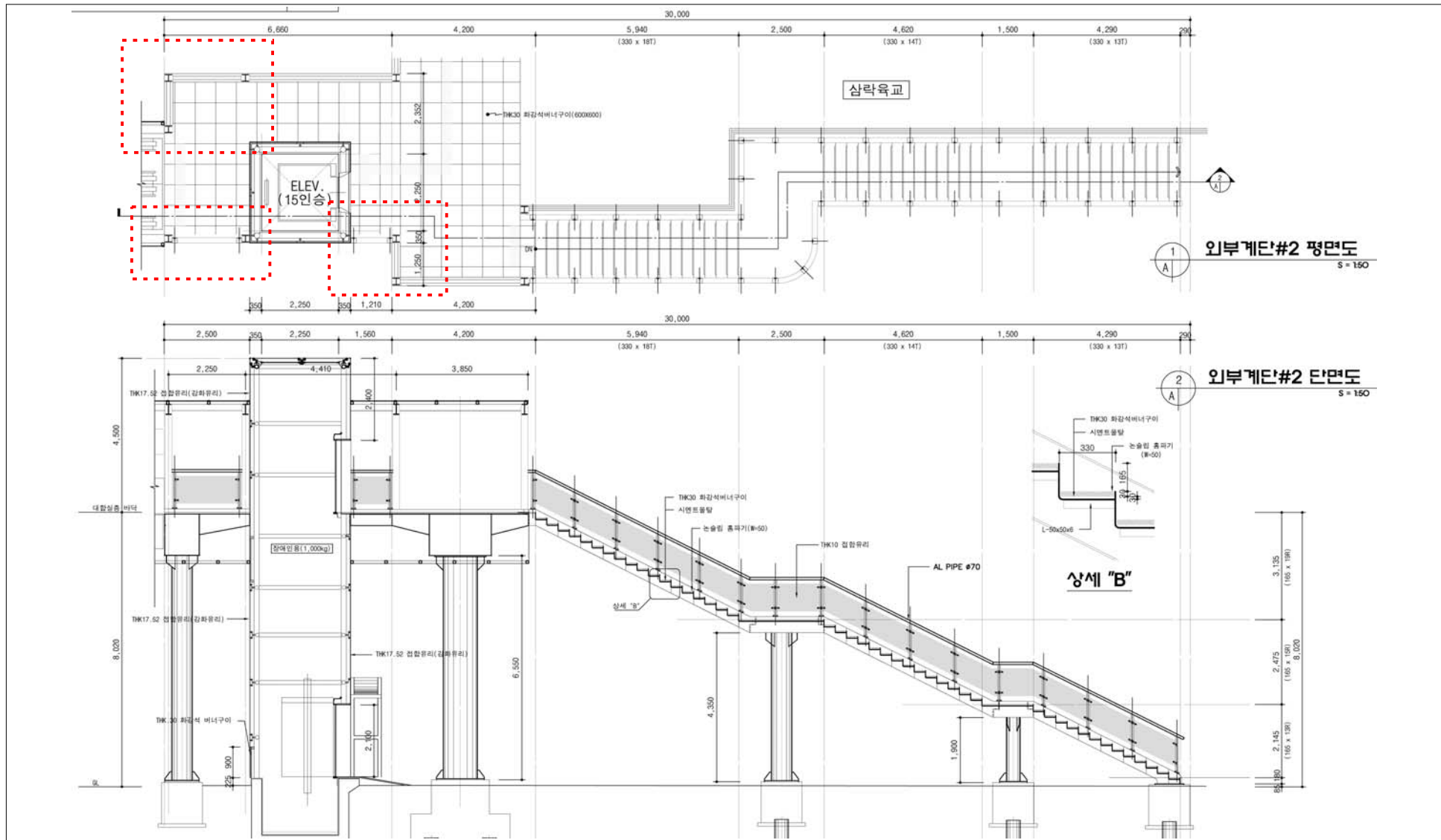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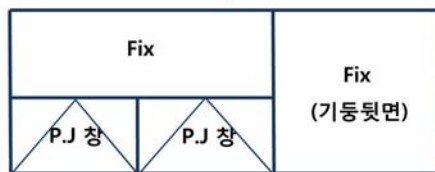




▪ 측면 창호 미설치 -> 오픈부위 창호설치 (우수유입 차단목적) ; 5개소



사상역



·창호크기(2625×1000)

발매기실 P.J창호도



- 고객지원실&발매기실의 FIX창호를 PJ창호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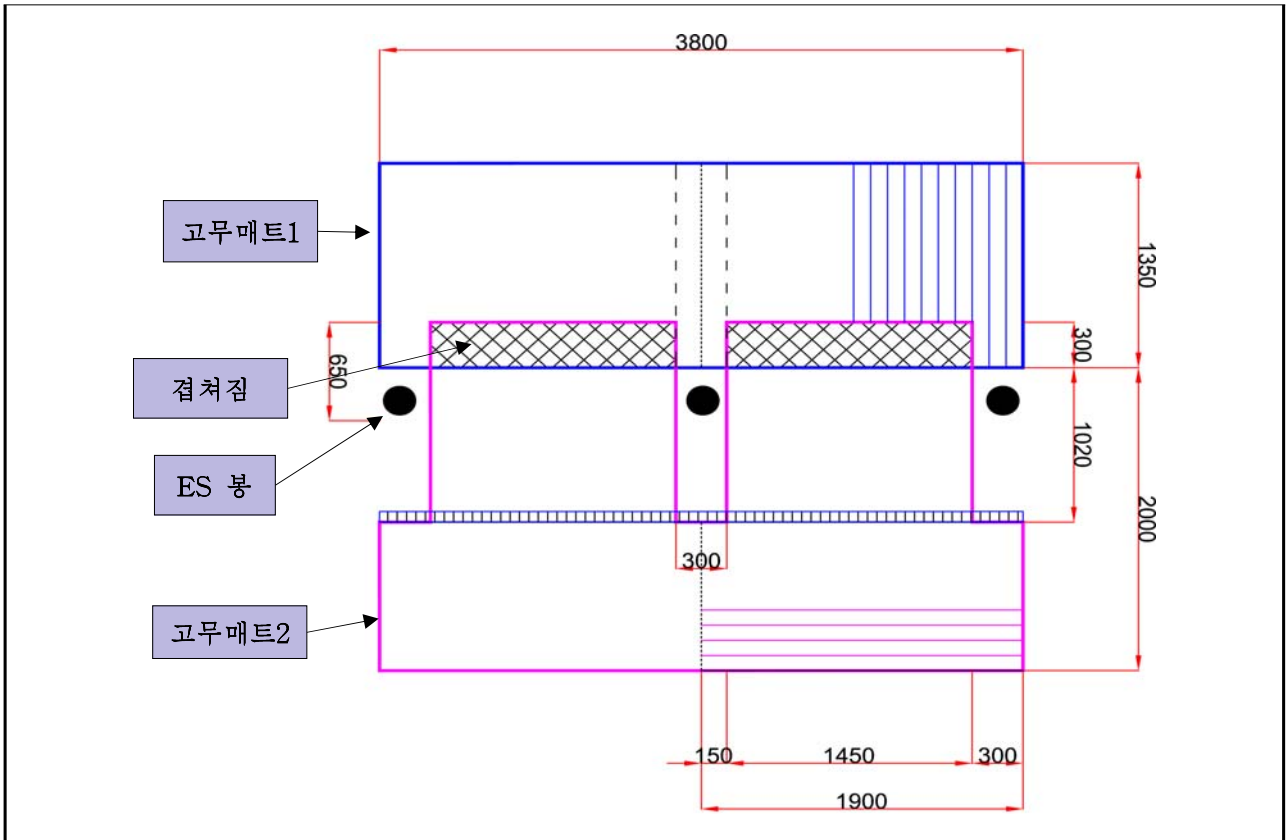
괘법르네시떼역, 서부산유통지구역



- 어닝설치(우수유입 차단)

서부산유통지구역





- 바닥 트렌치 추가설치
- 차수용 바닥 고무매트 추가설치

공hang역



- 철골빔 & 엘리베이터 와이어 설치(비둘기 퇴치용)

2-2 재료 및 시공시 주의사항과 검사

2.2.1 창호공사

- (1) 후레임은 THK.120 칼라알미늄 후레임에 불소수지코팅(단열바)로 시공하여야 하며, 창은 THK.18 저반사 칼라복층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프로젝트 창의 색상은 현 시설물과 동일한 색상이어야 한다.
- (3) 모든 부재는 녹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4) 복층유리는 기밀/수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5) 육교에 설치할 폴리카보네이트는 현재 시공된 상태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6) 금속공사 시공 및 조립방법(허용오차포함)은 일반공사시방서 내용을 따른다.
- (7) 시공 후 흔들림이 없고 외부 풍하중을 충분히 견뎌야 한다.
- (8) 방범창 설치시 주의하여야 하며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후 설치하여야 한다.
- (9) 설치시 외관도장이 벗겨져서는 안된다.

2.2.2 어닝설치 공사

- (1)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구조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용접하여 육교 철골에 부착하여야 한다.
- (2) 공사후 부식이 없어야 한다.
- (3) 천막은 강풍과 온도에 충분히 견뎌야 하며 수동으로 여닫음이 좋아야 한다

2.2.3 트렌치 설치 공사

- (1) 육교바닥 커팅시 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2) 트렌치는 모든 설치자재가 스텐레스 재질이어야 하며 외관이 미려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 (3) 트렌치 배수관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노출할 수 있으며 육교 판넬 안쪽으로 시공하여 외관상 보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4) 폐기물은 즉시 반출하고 커팅, 용접 등의 작업시에 안전과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한다.

2.2.4 고무매트 설치

- (1) 고무매트는 바닥과 밀착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여야 하며 두께는 최소 1.5mm 이상되어야 한다.
- (2) 고무매트 절단은 도면과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게와 설치

의 용이성에 따라 가공할 수 있다.

- (3) 설치 후 말림 등의 들뜸현상이 있으면 안되며 승객이 미끄러지거나 걸려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5 비둘기 퇴치시설

- (1) 스텐레스 타이와 와이어(도금선)을 사용하며 비둘기 차단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한다.
- (2) 모든 부재에 녹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종재료간 시공으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3) 외기에 면하는 와이어는 더위와 추위에 충분히 견뎌야 하며, 굽기는 작업 전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한다
- (4) 작업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2.6 시공시 주의사항

- (1) 이용승객 불편을 최소화하여 작업한다.
- (2) 용접작업은 필요시에만 작업 ; 작업전 현장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작업시 철골구조물 훼손을 최소화 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4) 기타 필요시 현장감독자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한다.

2.2.7 검사

- (1) 설치완료후 자체검사 실시하고, 담당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 (2) 현장 및 공사부위의 청소를 반드시 완료한 후 감독자 검사를 받는다.

2.2.8 준공승인 및 대가지급

- (1) 검사완료 후 대금지급 의뢰를 “갑”에게 요청하면 “갑”은 “을”에게 대가를 회계규정에 의거 지급토록 한다.

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

- (1) 작업장에는 “작업중” 이라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 (2) 당일 작업 종료 시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여 일괄 반출토록 한다.
- (3)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 안전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 "갑"측의 판단에 의해 불안정한 요소

가 발견될 시는 "갑"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갑" 또는 "을"의 손실을 전액 "을"이 부담한다.

(4) "을"을 당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폭행, 절도, 불법단체 결성 난동, 작업방해 및 속칭 "사보타지"를 하는 자, 제반수칙에 불복하는 자 등은 입법조치나 추방하여야 한다.

(5) "갑"의 직원지시에 불성실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즉시 추방해야한다. "을"이 이를 불이행할 시는 최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을"의 책임이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

제4장 품질 보증 기간 (하자 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